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건축 관련법의 보완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lement of the Architecture Act Related to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 Focusing on the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

Author 조철호 Cho, Cheol-Ho / 정희원,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소준영 Soh, Jun-young / 정희원, 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established in 2008 states that all service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fair and easily accessible for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While the previous society focused on providing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to disabled, the modern society gradually turning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quality of the life of disabled, especially in culture and art related activities.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also states that the services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rom 2010.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contradictions amo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Convenience Improvement Act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the Pregnant Woman, and the laws related architecture. So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technically with applying these laws. First, this research contains the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cts related to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of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econd, this research also lists the facts of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for the disabled and the Architecture related laws. Finally, several suggestions are stating for the complementarily improved architecture-related laws which were based on the standard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disabled.

Keywords 문화예술시설, 정당한 편의, 편의시설, 법, 장애인, 건축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Legitimate accommodation, Convenient facilities, Law, The disabled,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8년 4월 1일에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행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2009년 4월 11일부터 각 영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의 대부분은 의식주와 경제적 안정에 치우쳐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10년 4월 11일부터 단계별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차별법과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 건축 관련법들 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 실제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1998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접근 관련법이고, 그 법으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그곳에서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시설을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국내외 기존의 관련법을 상호 비교하여, 국내 건축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sohju@bc.ac.kr

** 이 연구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받아 수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

련법의 상충된 요소들을 추출하고, 외국의 정당한 편의 기준 등을 참조하여 국내 건축 관련법규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근거로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건축법, 건축기본법을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및 그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비교하여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충되는 법들을 보완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 중 미국의 ADA(American with Disabilities),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ADA Accessibility Guidelines: ADAAG), 호주의 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장애인 표준집(Australia Standards)과 독일의 BGG와 공업표준집(DIN)을 비교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및 각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기본항목과 국내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비교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기본요소를 비교하여 장애인편의증진법의 문화예술시설에서의 편의시설 기본항목을 제안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정당한 편의 제공의 개념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정당함이란 의미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동정에 의해 베풀어진 편의가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과 이동을 위한 반드시 필요하고 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도구·서비스를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정책·절차·관행 등을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의 인적·물적·비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¹⁾ 그중 같은 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된 환경이 아닌 가능한 통합적 환경에서 함께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과 통합적이지 못한 환경에 활동해야 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라 할지라도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²⁾

1) 최승철, 정당한 편의의 개념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1권 3호, 2010, p.67

미국의 정당한 편의는 ADA에서 제 1장 고용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호주의 장애인 차별(DDA)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BGG)은 정당한 편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통합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고용자로서 근무할 때도 정당한 편의 제공 중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문화예술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차별법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부분의 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①에 '시설물 및 이동 등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조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에는 11조와 12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시설물의 대상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는 별도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미국의 ADA는 제 3장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아닌 시설단체가 제공 또는 운영하는 공공편의

2) Ibid., p.71

3)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제15조 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같은 호 각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다. 모든 공공시설의 신,개축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편의시설의 장애물을 쉽게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해야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체적인 제공방법으로 서비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1조(정의)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편의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중 문화예술시설은 영화관, 극장, 연주회장, 오락시설, 박물관, 도서관, 화랑 또는 기타 공중 전시 및 수집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편의시설 장소내의 물품, 서비스, 시설, 편의제공을 향유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동 편의시설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운영자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는 문화예술시설로 구분하기보다는 제2절에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중에 제 23조 건물과 주변환경의 이용 및 접근에서는 장애인이나 동반자의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같은 접근과 이용권한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그 부지를 떠나도록 요구하거나 편의시설 이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BGG는 4조에 장애제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건축 등의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조에는 건축과 교통영역의 장애 제거는 신축건물이나 증축 건물들(최소한 1백 유로 이상의 소요되는)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게 되어 있다. 민간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의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동조 1항에는 '평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해결책으로 장애물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공법상 기관 및 재단을 이들 시설물에서는 통상의 기술 규정에 상응하여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3. 문화예술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법 비교 분석

3.1. 국내

(1) 장애인복지 관련 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시행령 제 15조에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의 2항에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 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시행령 14조에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등이며 공공기관의 경우 행사 7일 전에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편의증진법

정당한 편의증진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접근이란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포괄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제반 측면의 접근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시설은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중 문화예술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종류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문화예술시설의 종류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축관련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어 업무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편의증진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편의시설은 크게 ① 주출입구 등 매개시설, ② 복도, 계단 등 내부시설, ③ 화장실 등 위생시설, ④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⑤ 관람석, 열람석 등 기타시설로 분류하고 기본항목은 21개로 분류하여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의 다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며 대상시설에 따라 최소한으로 어떤 항목은 의무사항으로 어떤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이동 및 접근에 한계가 있다.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여 대상시설과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매개시설인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

규정하고 있다. 각 시설별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최소한 기준항목은 4.2 공간확보에서부터 4.37 벤치까지이며 총 36 항목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4조의 접근요소와 공간

공간확보와 도달범위	접근로	돌출물
바닥표면과 재질	주차장과 보행존	연석경사로
경사로	계단	승강기
리프트	창문	문
출입문	식수대	대변기
화장실칸막이	소변기	세면대와 거울
욕조	샤워칸막이	화장실
욕실과 샤워실	싱크	수납공간
조작기계	손잡이	경보
감지기	안내판	전화기
좌석과 테이블	집회장소	자동인출기
탈의실 및 라커룸	사우나실	벤치

특별요구사항은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의료시설, 비즈니스·상업과 시민, 도서관, 접근가능한 숙박, 교통시설, 사법·입법시설, 유치·교정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구분되어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시설의 종류는 공연장·영화관, 전시장·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분류된다. 그중 공연장·영화관과 전시장·박물관은 기준항목 36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은 별도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공연장과 영화관

공연장·영화관은 ADA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특별하게 분류되기 보다는 4조의 접근 요소와 공간 36개의 기준 항목을 준수하게 되어있다. 집회공간은 특별한 공간이기보다는 일반 기준항목의 하나인 4.33 집회장소(Assembly Area)의 관람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ADA and ABAAG)는 기준항목에도 있지만 8장의 특별한 실, 공간과 요소의 802 지침에 좀 더 상세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DA and ABAAG는 휠체어 공간과 관람시설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3>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집회공간 기준

휠체어 좌석수	휠체어 공간의 크기	휠체어 배치방식
바닥	공연공간(무대)의 접근	청취시스템의 위치와 타입

또 연방접근규정(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에는 집회공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집회공간은 “공중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종교적, 오락적,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이거나 여흥적인 목적으로, 혹은 음식과 음료의 소비를 위해 모인 오십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류는 공원, 경기장, 미술관, 관람석, 불링장, 교회, 법정, 드라이브인 극장, 테니스장, 도서관,

식당, 선물집, 방송국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들이다. 어떤 특별한 공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집회공간에 대해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적인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회공간의 휠체어 접근 가능한 좌석수는 총 좌석수가 4개 이상부터는 휠체어 장애인 접근가능한 좌석수가 하나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300개 이상부터는 최소한 한 개 이상 휠체어 공간을 비어두도록 되어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좌석의 배치는 입장료의 차이와 휠체어 등의 관람 시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통로 상에 위치하도록 고려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셋째, 청취시스템의 기능은 고정된 개인 의자까지 미치려면 무대나 연주자로부터 반경 15m(5ft)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정도 거리는 관객이 배우의 얼굴 표정과 다른 사소한 몸동작과 수화 통역자하는 수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이다.

<표 4> 미국의 연방접근성 표준기준의 집회공간의 휠체어 좌석수

전체좌석수	휠체어 접근 가능한 좌석수
4-24	1
26-50	2
51-300	4
301-500	6
500 초과	100 좌석수 당 1좌석 추가

2) 도서관

도서관은 4조의 접근 요소와 공간 36개 요소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간 8조를 기준항목으로 제안하고 있다.

<표 5> ADA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도서관 기준

독서실과 열람실	대출장소	카드목록과 잡지진열
서가		

세부적으로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된 좌석과 테이블 및 개인열람실 중 5%는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대출장소는 시민시설의 접수대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서고는 4.3의 접근로와 서고의 간격인 1065mm(42in)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2) 호주의 표준집(AS : Australia Standards)

호주 표준국에서 제정한 호주표준집(AS : Australia Standards, 2001)은 1993년 3월로 발효된 연방장애인차별법(DDA)에 의거 작성되었다. 그중 1428. 접근과 이동을 위한 설계의 사항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접근과 이동을 위한 설계

구분	주요내용
제1부	접근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 신축공사
제2부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제1부의 최소요건보다 더 나은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강된 접근요건)
제3부	지체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
제4부	촉지(시각장애인 또는 약시인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

제 1부는 접근에 대한 일반적 요건-신규 건축 공사에 규정하고 있다. 설계자나 이용자들에게 개인주택 공사를 제외한 신축공사 시 장애인 접근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기술하고 있는 이 규정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접근로나 회전공간, 일관된 연계시설, 보행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에 특히 주의를 요하게 되어 있다. 호주의 신축공사의 접근에 대한 일반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7> 호주표준에서의 접근로에 대한 일반적 요건-신축공사

보도, 경사로, 참 리프트	손잡이와 난간 손잡이 계단	현관출입문 및 활동공간 위생시설
화재방지시설	상시 접근로 표면	주차시설
청력증폭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좌석	조명

제 2부는 건축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나 기구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 1부의 최소 요건 보다 더 나은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보강된 접근 요건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표준 1428.2에 의해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8> 호주표준에서의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

활동공간	연결 접근통로 보도	경사로 및 경사로 참 리프트
손잡이	출입구와 문	위생시설
계단	주차장시설	경도관
심물	표지판	청력증감-청각시스템
조명	음향수준	가구 및 비품
팔 닿는 범위	제어장치	가구 및 비품
강당 및 집회장소	조망범위	거리시설물
개찰구	자동판매기	
우체통	횡단보도	

<표 9> 호주표준에서의 건물 및 시설의 추가 요구사항 (부록)

접근로, 경사로 및 참	계단	손잡이
위생시설	도달범위	제어장치
가구 및 비품	음수대	자동판매기
기타항목		

제4부는 시각장애인 또는 약시인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

호주표준집에는 대부분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편의시설 외에 특수형태의 건물에 대한 부분은 AS1428.2의 부록 B에 1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시설은 주택, 숙박시설, 상용건물, 상점과 쇼핑센터, 식음료시설, 집회시설, 공장 및 창고, 서비스창고, 교육시설, 도서관, 대중교통터미널 및 여객시설, 거리(쇼핑몰 포함), 레크레이션이다. 그중 문화예술시설과 관련된 항목은 집회시설(강당, 극장, 영화관, 운동장, 교회, 법정, 회의실), 10번 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입구, 문과 문간, 복도와 현관, 위생시설, 가구, 실내조절장치, 전화, 우체통, 조명, 표지 및 신호, 주차, 바닥면 등의 항목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공연장과 영화관

공연장과 영화관은 집회시설의 기준이 적용되며 집회시설의 종류는 강당, 극장, 영화관, 운동장, 교회, 법정, 회의실로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

집회시설은 1428.1의 접근로에 대한 일반적 요건-신축공사에서 규정된 내용 중 집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15. 다중이용시설의 좌석 부분과 16. 청력증폭시설이며 11. 화재방지시스템과 17. 조명은 국내 장애인 편의증진법보다 강화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좌석은 강당 내 접근성, 표면(경사도), 공간요건(휠체어공간 크기, 복도 및 회전폭)을 규정하고 있다. 17. 조명은 내부조명의 안전이동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명(사회자의 입놀림과 통역자의 몸짓언어가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S 1428.2의 부록의 특수형태의 건물 중 집회시설의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호주표준에서의 집회시설의 추가정보 사항

입구	문과 문간	복도와 현관
위생시설	가구	실내조절장치, 전화, 우체국
조명	표지 및 신호	

2) 도서관

도서관은 일반적 내용을 제외하면 복도와 현관 항목 중 서고 간 통로에서 휠체어 기본 활동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구에서는 카운터와 작업대의 높이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호주표준에서의 도서관의 추가정보 사항

입구	문과 문간	복도와 현관
위생시설	가구	실내조절장치, 전화, 우체국
조명	표지 및 신호	주차
바닥면	추가 주의사항	

(3) 독일의 공업표준(Deutsches Institute für Normung: DIN)

독일의 구체적인 접근성에 대한 법률은 공업표준(DIN)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건축적인 조치라 불리며, DIN 18024 Blatt 1의 설계기초인 가로, 주차장 및 보도와 18024 Teil 2의 설계기초인 공공시설, 18025-1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 DIN 18025-2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 그리고 별도로 장애인을 주거로 나뉜다.4) 이 법은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통, 빌딩, 주택 연방청에서 발간한 연구에서는 'direkt 55' 팜플렛을 근거로 기준을 제안한다. 'direkt 55'에는 철도역·버스·정류장·인터체인지, 공공거리환경, 공공건물로 구분된다. 그중 공공건물은 레스토랑, 스포츠와 레저 시설, 문화 및 의료 시설, 기관, 쇼핑센터 및 교육 기관 등이 있으며 공공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장비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본항목은 아래와 같다.

4) 강병근, 각국의 편의시설 법규집(독일), 보건복지부, 1999, p4

그중 문화시설의 휠체어사용자 좌석수는 1%이상이다.

<표 12> 독일 공업표준에서의 공공건물의 접근성 기준

구분	기본항목
디자인	출입구, 접근성
설비	정보 및 길찾기 시스템, 시각장애인 안내시스템, 공공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장애인을 위한 시설(레스토랑, 스포츠, 레크레이션 및 문화시설, 호텔의 좌석수 및 침실수)

4. 문화예술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법 보완

4.1. 장애인차별금지법

국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건축물을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금지하고 차별을 받을 경우 효과적으로 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기존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의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11조(시설의 대상의 범위)는 시설물의 단계적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제한·배제·거부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분야는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건축행위가 한정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11조(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법 18조의 시설물 이동 등의 접근·이용 또는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상충된 문제를 안고 있다. 문화예술 부분은 대상과 범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건축행위가 신축·증축·개축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수명은 최소 20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을 강요하게 되므로 기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행위인 신축·증축·개축 범위를 넓혀 대수선, 리모델링·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시설의 접근성은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에 편의증진법보다는 편의시설의 항목이 강화되어 있으나 상호법의 용어 차이의 조정 및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시설의 이용 및 접근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 항목 및 세부지침이 추가되어 개정되어야 한다.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의 2항의 편의시설 항목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매표소, 공연장 내의 정보관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여야 한다.

4.2.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에 ‘모든 생활영역(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편의증진법은 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에 따라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기본 권리에 차별을 받고 있다. 최소한 편의시설도 의무와 권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의무사항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열람석은 의무·권장 사항의 기준에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이 공공도서관의 진입은 가능하지만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의 제한보다는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에는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시설인 도서관 등은 부가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도 시설별·규모별로 편의시설의 항목의 차이를 주기보다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기준을 모두 제시하고 현재의 권장·의무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시설의 편의증진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 제10조는 편의시설의 지도와 감독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는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의 대부분은 건축과 정보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실제 소관부처의 차이로 건축허가 또는 준공 후 편의시설이 수정되는 작업이 많고 그에 따라 적정설치율도 낮아지고 있다. 또한 일선행정에서 편의증진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담당부서를 이관하거나 법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개정이 어려운 경우 편의시설의 지도와 감독 부분에 국토해양부장관도 포함시켜야 한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보조기구인 수동휠체어나 목발 등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의 이동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시설의 접근과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동의 차별금지)의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과도 상충되므로 장애인의 다양한 보조기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편의증진법은 현재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어린이 관련 문화예술시설인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등에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는 어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은 어린이를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는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아 향후 어린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내는

아직 시설의 이용보다는 최소한의 접근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다. 국내의 관람석의 예를 들면 휠체어 사용자의 좌석배치는 관람의 중요 기능보다는 출입구와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법률에는 휠체어의 좌석수뿐만 아니라 관람시선과 비상시 안전성과 청취시스템을 고려하여 좌석의 위치를 배치하게 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들에게 공연시 필요한 설비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람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호주의 기준에는 조명과 안내시설에 대해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열람석, 접수대 등 정도로 규정되어 있지 미국의 기준에서 제시되어 있는 서고 등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최소 접근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편의시설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만 의무로 갖추게 되어 있고 위생시설, 안내시설과 기타시설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각 세부시설은 욕실, 샤워·탈의실, 침실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항목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중 공연장의 샤워실 및 탈의실은 관람객에게는 필요 없지만 장애인의 직접적 예술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4.3. 건축관련 법

(1) 건축법

건축법은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는 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도”로만 되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이 사람들과 동등하게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적극적 방안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는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 일선의 장애인복

지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고 장애인단체가 점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11장 (건축허가)에 편의증진법 및 이동교통법을 확인 후 건축허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는 6층 이상만 승강기 설치의 의무사항이지만 편의증진법은 접근과 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5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두 법이 상충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1997년에 장애인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범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건물들이 인증을 받기보다는 공공과 복지 및 관련된 최소의 건물만 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을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증제도가 건축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 건립을 위해선 허가뿐만 아니라 일정이상의 규모 건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현재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분야 중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건축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도 장애인 및 노인의 건축이용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에 장애인·노인 건축 부분을 포함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2) 건축기본법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보다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듯하나 아직까지는 장애인을 배려한 정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권리로서 접근을 강조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공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3> 문화예술시설의 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의 보완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 안전 용주 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럭 및 안내 시설	유도 및 피난 시설	경보 및 침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전시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교육연구시설	도서관(1000㎡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표 14> 문화예술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법 보완

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편의증진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기본 개념	<p>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접근권 등에 관한 모법이지만 타 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강화하기 하기위해 세부 시설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접근권에 대한 관련된 편의증진법과 건축 관련법이 개정되면 접근권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모법으로만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 내용 중 시설 대상 범위와 단계적 범위는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제한·배제·거부에 해당됨으로 넓은 범위로 확대 개정되어야 한다.</p>	<p>편의증진법은 2007년 법령이 제정된 이후 14년 동안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내용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행보를 영위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의증진법 개정이 필요하다.</p>	<p>건축법에서 장애인 관련 부분은 건축설비의 한 부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축기본법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공공성 측면으로 장애인의 접근을 배려로 보지 장애인의 권리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접근 관련법은 건축법위에 해당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부서가 담당함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설치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조사, 건축정책, 건축설계, 건축심의, 건축허가, 건축시공, 준공 등의 단계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건축 분야가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피난 사항의 법 내용도 개정하여야 한다.</p>	
보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대상 범위와 건축행위 종류 확대 개정 필요 ■ 문화예술시설 내의 활동의 참여와 관람 등에 따른 편의시설 항목 개발 필요 ■ 문화예술시설의 편의시설기준과 편의증진법이 상충되는 기준 조정 필요 : 문화예술시설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매표소, 공연장 내의 정보 관련 시설의 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최소한 접근 개념이 아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 개정 필요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및 설치할 편의시설 종류 개선 필요 ■ 장애인들의 이용과 접근을 고려한 편의시설 항목 개선 필요 ■ 지도 감독기관의 조정 및 조율 필요 ■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 이용을 고려한 편의증진법 개선 필요 ■ 공연장 등에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법 개선 필요 ■ 도서관, 집회공간 등의 특별시설과 관련된 별도의 편의시설 기준 수립 필요 ■ 성인 중심이 아닌 편의 증진이 아닌 장애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 기준 개발 필요 ■ 탈의실·샤워실과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 기준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에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 관한 사항 포함 필요. ■ 건축위원회 및 심의 사항 내용에 장애인·노인 등의 건축 분야 포함 필요.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건축법에 포함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중 장애인 관련시설 및 설비는 기존의 편의증진법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도 따르도록 개정 필요. ■ 편의증진법 내용과 상충되는 승강기 설치 기준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의 배려가 아닌 권리로써 개정 필요 ■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항목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필요 ■ 건축기본 조사 및 건축 전반의 정책 수립과 수행하는 위원회에 장애인·노인 등의 건축 분야 포함 필요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에 대한 사항 포함 -국가 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과 이용의 보장을 위한 정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건축정책 국회보고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차별없는 접근 보장사항 포함 -정책조정분과위원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과 접근 보장에 관한 사항 포함 -민간전문가 참여에 장애인·노인건축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 포함 ■ 건축디자인의 설정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고려하는 내용 포함.

법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와 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와 시행령 제 10조(분과위원회), 15조(건축 기본조사),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는 건축의 기본조사 및 건축 전반에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에 보고하는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에 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이용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법 21조(건축디자인의 설정)와 시행령 제15조(건축디자인의 설정)는 장애인 등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5. 결론

2008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은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문화예술 활동의 당한 편의제공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존의 관련법과 상충되

어 실제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국내외의 기존의 관련법을 비교하여 국내 건축 관련법의 상충된 요소를 추출하고 외국의 정당한 편의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법규를 보완하였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모법이지만 타 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시설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접근권에 대한 관련된 편의증진법, 건축 관련법을 개정하여 접근권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모법으로만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 내용 중 시설 대상 범위와 단계적 범위는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제한·배제·거부에 해당됨으로 독일과 같은 포괄적 범위로 확대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시설의 정당한 편의의 기준과 장애인편의증진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2. 편의증진법은 2007년 법령이 제정된 이후 14년 동안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내용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인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과 다르게 장애인편의증진법은 대상시설의 종류

와 규모, 종류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유무를 결정하여 설치대상을 의무와 권장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충되고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행복을 영위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하여 포괄적인 정의로 법을 수정하여야 한다.

3. 건축법에서 장애인 관련 부분은 건축설비의 한 부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축기본법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공공성 측면으로 장애인의 접근을 배려로 보지 장애인의 권리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접근 관련법은 건축범위에 해당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부서가 담당함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 설치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조사, 건축정책, 건축설계, 건축심의, 건축허가, 건축시공, 준공 등의 단계에서 장애인, 노인 등의 건축 분야가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병근, 각국의 편의시설 법규집(독일), 보건복지부, 1999
2. 건축기본법, 2010
3. 건축법, 2010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2010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0
6. 최승철, 정당한 편의 개념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 1권 3호, 2010
7. 호주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
8. 호주표준국, 호주표준집, 2001
9.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 ADA
10. UNITED STATE SACCESS BOARD,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Architectural Barriers Act Accessibility Guidelines, 2004
11. U.S. 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Buildings and Facilities
12. 독일 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2002

[논문접수 : 2011. 10. 31]

[1차 심사 : 2011. 11. 17]

[개재 확정 : 2011. 12. 09]